

미국판례

허위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여 25 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1 백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Machleder v. Diaz 618F. Supp. 1367 (뉴욕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 1985)

사실개요

CBS 텔레비전 방송국은 1979. 5. 22. 뉴저지 주 뉴욕의 어느 지점에 화학적 폐기물이 들어 있는 드럼들이 버려져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방영하였다. 원고는 이 보도와 관련하여 CBS 및 이를 취재한 기자 Diaz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및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명예훼손, 권리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모두 법원에 의하여 청구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약식재판으로 기각되고, 배심재판에 의하여 허위에 의한 사생활침해만이 인정되었고 배심은 25 만 불의 보상적 손해배상 및 1 백만 불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평결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원에 이 평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려주거나 선택적으로 새로운 심리를 하여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사생활침해 소송의 경우 방송국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음이 증명된 이상 원고가 방송국이 원한이 나 악의로 행동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배심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평결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

2. 화학적 폐기물을 버렸다는 보도를 방영한 텔레비전 방송국에 대하여 허위에 의한 사생활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25 만 불의 보상적 손해배상의 배심 평결은 과도하거나 이례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가 원고의 권리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행동하였고 그러한 행동이 피고에 의하여 그 사업정책의 일부로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이 인정됨에 비추어, 1 백만 불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심평결 역시 과도하지 아니 하다.

판결이유

Leisure 판사의 견해

CBS 는 연방민사소송규칙 50(b)에 기하여 배심의 평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려주거나 선택적으로 위 소송규칙 50(b)에 기하여 새로운 심리를 하여줄 것을 신청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의 대상은 배심의 손해배상의 평결들에 대한 것이다. CBS 는 이 평결들이 법률적으로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구체적으로, CBS 는 원고인 Machleder 가 실질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하였다고 가정할지라도 배심이 Machleder 가 1979. 5. 22. 방영의 결과 Machleder 가 실질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CBS 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평결은 기록에 의하여 뒷받침할 수 없고 극히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보상적 손해 배상

배심의 평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되는 판결의 신청을 인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연방 제 2 항소순회법원은 *Mattivi v. SouthAfrica Marine Corp.*, 「HuguenotJ, 618F. 20163(1980)판결에서 「사실심 법원은 (1)평결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어서 배심의 사실인정이 막연한 억측이나 상상의 결과라고 밖에는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2)신청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청인에게 불리한 평결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심의 평결에 불구하고 이에 반대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언론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제 1 조를 고려하여야 할 사건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Time, Inc. v. Firestone*, 424U. S. 448(1976) 판결에서 보상적 손해배상의 평결은 손해에 대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저지 법에 의하면 원고가 손해 또는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자료를 배심에게 제시한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허위에 의한 사생활침해의 불법행위는 평판보다는 감정을 손상시키는 허위를 보상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그 손해는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침해하고 신체적 손상에 의한 고통보다 훨씬 심한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

CBS는 공판기록상 배심의 보상적 손해배상의 평결을 뒷받침할 증거로서는 방영의 결과 극히 당황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의 Machleder 자신의 증언 이외의 것을 찾을 수 없고 이는 감정의 손상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바꾸어 말해서 CBS는 원고는 그의 심적인 고통의 성질, 그 존속기간이나 심각성 및 그 방영이 어떻게든 그의 생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상적 손해배상의 평결은 억측과 상상에 기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증언만이 원고의 감정의 손상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CBS는 원고의 증언 중 방영이 그를 불법한 공해물질 폐기자로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그 방영의 중지를 위하여 미친 듯이 노력하였으며 위 이야기가 화학업계에서 일하는 그의 아들들의 경력을 망칠 것을 걱정하였다는 내용의 증언부분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Machleder에게 어떻게든지 버려진 폐기물 드럼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암시만으로도 그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음은 방영된 테이프 그 자체를 볼 때 명백하다. 더욱이 원고가 문제의 보도를 방영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을 때 그와 이야기한 CBS의 변호사는 당시 원고는 상당히 흥분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 증언의 일부는 그 보도가 방영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기록상 그 방영 이후 Machleder의 심적인 상태가 나아졌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없다. 그의 두려움, 이해와 고통은 공판에서의 그의 증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에게 그 보도를 보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심하여졌다고 보는 것이 공정한 추론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CBS는 Machleder의 법정 태도의 측면을 무시 하였다는 점이다. 공판기록상 무감정하게 기록된 그의 증언에는 그 증언이 행하여진 극적인 감정적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원고의 증언은 극히 감정적이었고 몇 번인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을 흘렸다. 이러한 그의 증언태도는 의심할 여지없이 배심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법원에도 피고의 방영은 Machleder의 심적인 상태에 진정하고도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의 고통이 그사이의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원고의 손상된 감정의 깊이와 범위에 대한 증거이다. CBS는 배심의 평결이 오직 단순한 억측과 상상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나 CBS에게 유리한 증거가 압도적이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CBS에게 불리한 평결을 낼 수 없을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현실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평결을 취소하거나 새로운 심리를 할 것을 구하는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CBS는 다음으로 원고가 현실적인 손해를 입증하였다고 가정할지라도 배심의 보상적 손해배상의 평결은 극히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신청의 경우, 법원은 평결이 감정이나 편견 또는 선입감의 결과이거나 법원의 양심에 비추어 극히 과도하거나 충격적이어서 평결을 지지하는 것이 정의의 부인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한 배심의 손해배상의 평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배심이 편견이나 감정에 기하여 행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배심이 책임과 손해배상의 쟁점을 별도로 심리한 점 및 위 공판심리중의 배심의 여러 가지 심리태도에 비추어 배심은 주의 깊고 신중하게 법원의 법리설시에 따르고 감정이나 편견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도한 배상의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법원은 배심의 평결을 실질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평결이 법적인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로 과도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상급심의심사를 받은 심적인 고통에 관한 손해배상의 평결에 관한 판례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 CBS는 보상적 손해배상액이 감액되거나 전액 취소된 사건들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들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 사건의 사실과 배경들을 잘 살펴보아도, 배심의 25만 불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평결이 과도하거나 이례적인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CBS의 보상적손해배상액의 감액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징벌적 손해 배상

CBS는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평결의 액수가 법원의 양심에 비추어 충격적일 정도로 과도하므로 그 평결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원고는 CBS가 원한이나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보통법상의 악의가 있어야 하는가 또는 현실적 악의로 충분한가

연방대법원은 *Gertz v. Robert Welch, Inc.*, 418U.S.323(1974)판결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제 1 조에 비추어 공공의 관심사항에 관련된 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현실적 악의 즉 허위의 인식 내지 진실의 부주의한 무시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발표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평결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였다. *Gertz* 판결이 각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함에 있어서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부분의 주법원과 연방법원은 현실적 악의의 기준을 이 점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평결의 유일한 요건으로 채택하여 왔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뉴저지법상 연방대법원의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u.5.254(1964)에서 판시한 현실적 악의의 증명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평결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또는 원고는 또한 별도로 보통법상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현실적 악의와 보통법상의 악의는 별개의 개념이다. 뉴저지 대법원은 *Maressa v New Jersey Monthly*, 89NJ.176(1982)판결에서 「현실적 악의는 명예훼손적인 허위사실이 악의로 발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허위임을 알거나 또는 허위인지의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고 발표가 행하여졌음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이 현실적 악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주법원에서 보통법상의 개념인 악의의 의미를 연방헌법의 요청에 맞추어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뉴저지 대법원은 *Burke v. Deiner*, 97N. J 465 (1984) 판결에서 「연방적 기준을 기존의 주법상의 기준에 덧붙임은 혼란한 명예훼손의 법리에 또 하나의 복잡성을 보태는 결과로 될 것」이라고 판시 하였다. 그 결과 위 법원은 공적인 연설의 경우 인정되는 제한된 면책특권이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NewYork Times* 사건의 현실적 악의의 기준을 채택하였다.

또한 위 법원은 「배심이 원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한 위 사건에 있어서 배심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 또는 진실의 부주의한 무시라는 이 기준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에도 적용하도록 법리설시가 행하여져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Burke v. Deiner 사건의 중심적인 쟁점은 정부관리가 명예훼손적 이라는 공적인 발표에 관하여 면책특권을 지니는지의 여부이었다. 그 사건은 개인이 언론매체인 피고를 상대로 한 허위에 의한 사생활 침해로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법원이 배심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를 심리함에 있어 현실적 악의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리설시가 행하여져야 한다고 판시 하면서 인용한 *Embrey v. Holly*, 293Md.128(1982)판결과 *Davis v. Schuchat*, 510F. 2d731(D.C, Cir. 1975)판결은 모두 개인이 언론매체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었다. 위 법원이 이들 판례의 인용한 점 및 연방의 기준을 주의 기준에 덧붙임으로써 야기될 혼란을 논의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뉴저지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배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현실적 악의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설시 할 것을 요구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배심이 CBS 가 현실적 악의로 행동하였음을 인정한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를 심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평결은 과도하였는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 백만 불의 지급을 명한 평결을 심사함에 있어서, 법원은 방영을 둘러싼 상황, 잘못의 성질, 침해의 정도, 피고행동의 숨은 의도, 피고의 재산 정도는 물론 배상액을 강경할 만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야 한다. 뉴저지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현실적 손해액과 고정된 비례적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은 요구되지 아니 한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상당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평결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의 행동은 원고의 권리에 대하여 무감각 내지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 의 피용자들은 *Machleder* 에게 버려진 폐기물드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그가 2년 전 이미 이를 지방정부에 보고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에 대한 필름을 방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증거들에 의하면 그 필름은 그것이 없었더라면 성공하지 못하였을 이야기에 약간의 흥미를 주기 위하여 이용되었음을 시사하고 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평결의 목적의 하나는 이후 유사한 성질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CBS 피용자들의 이 사건 방영의 취급에 대한 태도에 관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러한 활동이 사업정책의 일부로서 반복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배심에게 CBS 가 소유한 재산에 관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소장에 의하면 1978 년 CBS 의 총수입규모는 30 억 달러는 넘었고 순수익은 1 억 9 천 8 백만 달러를 넘었다. 1 백만 불의 평결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유형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서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일깨워주기 위하여 충분하다. CBS 는 손해배상액의 강경을 위하여 존재하는 위험을 널리 알림으로써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였고 폐기물 드럼들이 적절하게 처분되도록 하였음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확실히 손해배상의 액수를 감경 할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 주장들은 배심에게도 행하여졌고 배심에 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평결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었다. 이 점에 관하여 배심의 평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결론

CBS 의 평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되는 판결의 신청이나 새로운 심리의 신청을 기각한다.